성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군계획시설) 결정(변경)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2년 5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사유

○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905-3번지 일원에 성주 복합클러스터단지내 계획부지를 활용하여 공설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체력 향상은 물론 군민의 화합 및 축제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이 필요함.

○ 성주 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체육시설, 주차장) 결정(변경)“안”에 대하여 주민의 견청취,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“안”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.

2. 결정 내용

[군 관리계획(용도지역, 체육시설, 주차장) 결정(변경) “안”]

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: 계획관리지역 83,065㎡, 농림지역 27,100㎡
 - 농림지역 → 계획관리지역 27,100㎡

2)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
 - 체육시설 37,570㎡ → 110,165㎡ (증 72,595㎡)
 주 차 장 8,820㎡ → 10,400㎡ (증 1,580㎡)

3. 결정 사유

○ 현대적 시설의 운동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우리군의 체육진흥 및 레저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도시공간 구조의 재장출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주민의견 청취

1) 주민공람 (1차)

○ 공람기간 : 2012. 3. 8 ~ 3. 30 (20일간 : 공휴일 제외)
○ 주민설명회 개최 : 2012. 3. 14 (성주읍사무소 2층)
○ 공람방법 : 매일신문, 신아일보, 성주군 홈페이지, 읍·면게시판
○ 공람장소 : 성주군청 도시행정과, 성주읍사무소, 대가면사무소
○ 주요의견 : 제출의견 2건 - 반영

2) 주민공람 (2차)

○ 주민공람(1차) 의견 반영에 따른 재공람 - 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제8조
○ 공람기간 : 2012. 5. 10 ~ 5. 25 (14일간 : 공휴일 제외)
○ 공람방법 : 경북도민일보, 경북매일신문, 성주군 홈페이지, 읍·면게시판
○ 공람장소 : 성주군청 도시행정과, 성주읍사무소, 대가면사무소

나.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

1) 추진현황

- 2011. 11. ~ 2012. 1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서 작성
- 2012. 2. 10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
- 2012. 3. 8. ~ 3. 30 주민 의견청취 (1차) 및 주민설명회
- 2012. 4. 5. ~ 5. 22 군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
- 2012. 5. 10. ~ 5. 25 주민 의견청취 (2차)

2) 향후 추진계획

- 2012. 6월 중 의회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심의·자문
- 2012. 6월 말 경상북도 승인신청
- 2012. 7월 중 경상북도 관련부서(기관) 협의
- 2012. 8월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12. 8월 말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1. 주민 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
2. 관련부서(기관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3.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및 도면

붙임1

주민 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

【1차 공람】

□ 공 람 기 간 : 2012. 3. 8 ~ 3. 30

□ 공 고 방 법 : 매일신문, 신아일보, 군 홈페이지, 읍·면게시판

□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- 2건

의견제출자		제 출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주 소	성명			
-	박세득 외12인	○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(대가면 옥성리 132-2)가 대종중산으로써 선조묘지 13기가 안장되어 있어 사업구역에서 제척요구	○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의 체육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내에서 토지이용계획의 일부 변경을 통하여 사업구역에서 제척	반영
-	박영호 박영태	○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(대가면 옥성리 11-5, 11-8)내 선조묘지 9기가 안장되어 있어 사업구역에서 제척요구		반영

【2차 공람】

□ 공 람 기 간 : 2012. 5. 10 ~ 5. 25

□ 공 고 방 법 : 경북도민일보, 경북매일신문, 군 홈페이지, 읍·면게시판

□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

의견제출자		제 출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주 소	성명			
		의 견	없 음	

붙임2

□ 성주군 관련부서(기관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【관련부서】

관련부서 (기관)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환경보호과	<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의견> ○본 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므로 사업인허가 전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	○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신청시 관계행정기관의 장(대구지방환경청)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겠음	반영
	<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의견> ○상기 사업대상지는 할당부하량 (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)부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수질오염총량관련 검토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전 개발 할당부하량을 받아야 사업이 가능함.	○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시 수질오염총량관련 검토서를 제출하여 사업시행전 개발 할당부하량을 받겠음	추후 반영
도시행정과	<상수관련 의견> ○사업계획서상 사업대상지 체육시설의 최대수용인원의 생활용수 공급량을 324㎥/일로 산정	-	-
	○체육시설에 필요한 생활용수는 성주 통합배수지(Q=2,500 ㎥/일)계통으로 용수 공급토록하며, 상세한 공급계획은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시 재협의	○추후 실시계획인가시 상세한 상수공급계획에 대하여 재협의토록 하겠음	추후 반영
	○상수도시설과 관련된 관종, 관경, 수리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설계시 사전협의하여야 하며, 상수도시설 기준 및 성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함	○추후 실시계획인가시 상수도 시설과 관련된 관종, 관경, 수리계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음	추후 반영
	○『수도법』제71조 따른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	○『수도법』제71조에 따른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발생시 별도 협의하겠음	추후 반영

관련부서 (기관)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도시행정과	<하수관련 의견> ○상기 위치는 성주군 하수처리구역 밖으로서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시설규모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	○사업대상지는 하수처리구역밖으로서 체육시설내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음	반영
	<교통관련 의견> ○사업대상지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148호(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지정)에 의한 교통권역이며 당해사업은 『도시교통정비촉진법』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.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이 될 경우 추후 재검토되어야 할 것임. 또한 사업시행시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한 사항은 성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.	○향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 수립 대상시 재협의하겠음. 또한 사업시행시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한 사항은 성주경찰서와 협의하겠음	반영
	○사업계획상의 부설주차장은 성주군 주차장조례(이하 "동조례")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결과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. 단 부설주차장의 설치시 동 조례 제1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확행하여야 함.	○의견수렴	-

관련부서 (기관)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건설안전과	<사전재해영향검토 관련 의견> ○사업대상지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(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) 및 시행령 제6조(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협의방법 등)에 의거 경상북도 협의사항임	○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으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신청시 관계행정기관의 장(경상북도)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겠음	반영
	<소하천정비법 의견> ○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군계획시설 구역내에 소하천인 대흥천, 옥성천이 위치하고 있어 소하천의 지정·변경·폐지 및 사업시행시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협의하여야 함	○사업구역내 소하천인 대흥천, 옥성천에 대하여 사업시행시 소하천의 지정·변경·폐지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협의토록 하겠음	추후 반영
	<농림수산식품부 소관토지 의견> ○사업대상지에 편입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(도로, 구거)에 대하여 『농어촌정비법』제14조에 의거하여 관리처분 협의 후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96조 및 제97조에 의거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	○사업대상지에 편입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	추후 반영
	<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의견> ○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에 대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시 『농어촌정비법』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공사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와 대체시설 확보에 대한 협의 후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	○사업구역내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시 『농어촌정비법』 제24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의 용도폐지와 대체시설확보에 대한 협의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	추후 반영

관련부서 (기관)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건설안전과	<국토해양부 소관토지 의견> ○사업대상지에 편입된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토지에 대하여는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96조 및 제97조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 등의 협의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	○사업대상지에 편입된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 및 용도폐지 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	추후 반영
재무과	○용도지역,군계획시설(교통시설, 공공·문화체육시설)부지내 포함된 군유지(대가면 옥성리1-1)는 하천부지이므로 소관부서인 건설안전과와 별도로 협의하여 조치	○사업구역내 포함된 군유지(옥성리 1-1)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건설안전과와 협의하였음	반영
	○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양여받을 수 있으며, 양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성주 군관리계획의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우리군이 수의계약으로 매수가 가능함	○사업구역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양여 또는 국유재산 관리·처분 기준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우리군이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겠음	반영
	○이에 따라 용도지역,군계획시설(교통시설, 공공·문화체육시설 부지내의 국(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)소유부지는 건설안전과 소관이므로 건설안전과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, 국(기획재정부)소유부지(성주읍 대흥리 899-2외 3필지)는 재무과소관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하여 결정	○사업구역내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건설안전과와 협의하였으며, 기획재정부 소관재산에 대하여 조달청과 협의하였음	반영

관련부서 (기관)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산림과	○군관리계획(용도지역,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산지분야 협의요청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협의하오니 협의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	○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따른 산지분야협의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겠음	반영
	○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고시 후에는 그 결과를 우리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본 협의 이후 목적사업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신청시에는『산지관법』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검토하여야 함	○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고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실시설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겠음	반영
문화체육과	○상기 신청대상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므로 사업시행전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에 해당되며,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지표조사를 선행후 그 결과에 따라 제반절차(발굴 등)을 이행하고, 지표조사 후 그 결과를 문화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	○본 사업대상지는 3만 ㎡이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상북도 문화재과 및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으며, 그 결과에 따라 제반절차를 이행하겠음(문화재청 발굴제도과-5283)	반영
농정과	○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177호 제7조에 의거 제18조 <별표 4>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시기 바람	○경상북도 승인신청시 도 농업정책과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겠음	반영
	○상기 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정비된 지역으로 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낮으며, 체육시설을 조기에 완료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유지를 위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하도록 농지전용협의 함이 타당함	○의견수렴	-

관련부서 (기관)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기획감사실	○본 사업은 성주복합형테마클러서 터내 계획부지를 활용하여 공설 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현대적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체력증진과 축제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	○의견수렴	-
대가면	○군관리계획(체육시설 및 주차장 결정(변경)안에 따른 사유지 이용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는 분위기이고, 사업실시 이전에 주민들의 주 관심사항인 보상관련, 토지경작관련에 대한 충분한 주민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, 지역의 체육시설인 만큼 시설의 휴장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	○사업구역내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한 보상일정 및 토지경작관련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며, 체육시설 운영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음	반영
성주읍	○기존 체육시설부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이용 및 현대적 시설의 운동장설치를 위한 면적변경과 기존 주차장의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에 따른 주차장시설 면적 변경에 대하여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, 보상처리일자 및 익년에 농지를 사용해도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궁금해 하고 있으며, 사업시행 전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	○사업구역내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한 보상일정 및 토지경작관련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며,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	반영

【관련기관】

관련부서 (기관)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한국 농어촌공사	○사업예정지에 편입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대체시설 완료후 『농어촌정비법』제24조에 따라 폐지등의 절차를 거쳐야됨 ○사업시행전 대체시설 설치계획 및 폐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우리공사와 사전협의후 시행하시기 바람	○사업구역내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시 『농어촌정비법』 제24조에 의거 농업기반시설의 용도폐지와 대체시설확보에 대한 협의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	추후 반영
한국도로공사 성주지사	○성주 체육공원(공설운동장 묘성사업과 관련하여 진입로 확폭(4→8m)을 위한 교량(대황3교)A1지점의 앞성토 일부 제거후 옹벽설치에 대하여 우리관리소의 의견은 앞성토 제거시 교대밀림현상 발생과 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어 곤란하오니 다른 대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, ○부득이 진입로 확장이외의 다른 대체방안이 없을시에는 우리공사의 도로교통기술원에 용역 의뢰후 그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	○본 사업구역내 북측으로 성주IC가 인접하고 있어 국도 33호선으로 진출이 어려우며, 통로박스를 이용하여 승용차량이 진입하고 있음 ○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대형차량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진출입구를 2개소이상 확보하여야 하며, 국도33호선의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흥교차로를 통한 차량의 흐름이 많아 질 것을 고려하여 남측 진입도로의 확폭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○추후 실시설계시 교량 및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교통기술원에 검토의뢰하여 별도 협의하겠음	추후 반영
조달청	○성주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협의 요청한 해당필지에 대하여 검토한바, 군민들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가 가능한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계획에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림	-	-

관련부서 (기관)	협 의 의 견	조 치 계 획	비고
조달청	○단 사업시행전에 재산관리기관과 토지 수용여부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	○추후 실시계획인가시 재산관리기관(한국자산관리공사)과 토지수용여부를 협의하겠음	추후반영
부산지방 국토관리청	○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905-3번지 일원 체육시설 및 주차장시설 사업계획이 우리 청에서 시행중인 『고령-성주3 국도건설공사』간의 STA 5+860~6+440에 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진출입 도로는 본공사 통로암거 및 대흥교차를 연결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, 대흥교차로는 시공완료후 진출입도로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	○의견수렴	-

붙임3

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
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110,165	-	110,165	100.0	
관리지역	소 계	83,065	증) 27,100	110,165	100.0	
	보전관리지역	-	-	-	-	
	생산관리지역	-	-	-	-	
	계획관리지역	83,065	증) 27,100	110,165	100.0	
농림지역		27,100	감) 27,100	-	-	

- 용도지역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위 치	용 도 지 역		면 적 (㎡)	용적률	변 경 사 유
		기 정	변 경			
-	대가면 옥성리 7번지 일원	농림지역	계획 관리지역	27,100	100%이하	· 체육시설(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

2.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

가. 교통시설

1)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경	성1	주차장	성주읍 대흥리 922번지 일원	8,820	증) 1,580	10,400	성주군 제 15호 (11. 5.6)	

- 주차장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성1	주차장	· 주차장 면적증가 · 위 치 : 대흥리 922번지 일원 · 면 적 : 8,820㎡ →10,400㎡ (증 1,580㎡)	· 기존 주차장의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에 따른 주차장시설 면적 변경

나. 공공·문화체육시설

1) 체육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성3	체육시설	운동장겸 참외축제장	성주읍 대흥리 905-3번지 일원	37,570	증) 72,595	110,165	성주군 제15호 (11. 5.6)	

- 체육시설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성3	체육시설	· 체육시설 면적증가 · 위 치 : 대흥리 905-3번지 일원 · 면 적 : 37,570㎡ →110,165㎡ (증 72,595㎡)	· 기존 체육시설부지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현대적 시설의 운동장 설치를 위하여 체육시설 면적 변경